

여성발전기본법 실효성 의문

시행령없는 조항 수도룩..장관의 자의적 기금운용 제동장치도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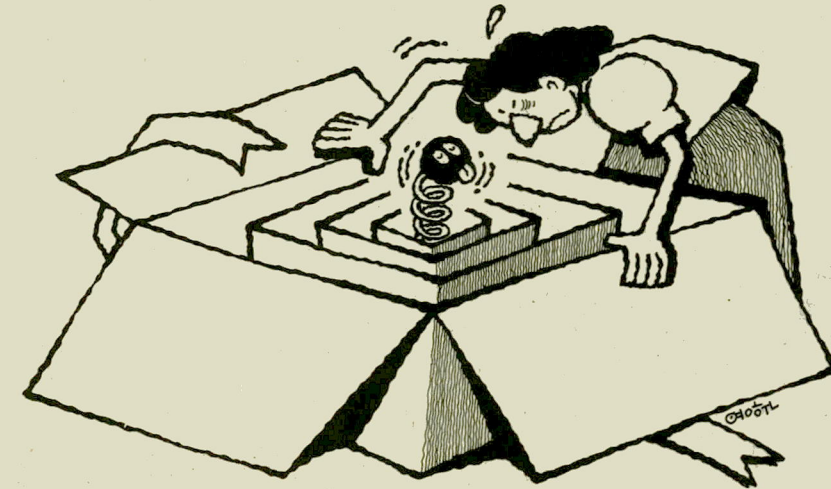
권정숙 기자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령안이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2장관실이 지난 21일 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설명회'에 참석한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기본법의 주요조항 관련 시행령을 아예 마련하지 않는 등 크게 미흡해, 선언적 의미밖에 지닐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성계가 이날 가장 큰 문제로 든 대목은 기본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3장 제15~28조 '여성정책의 기본 시책' 관련 시행령이 거의 백지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었다. 이 조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강화, 가정·학교·사회교육 및 여성복지 증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등 여성문제 전반을 다루는 중요 부분이다.

지난해 말 모법이 제정될 당시 이들 조항



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막연하게 돼 있어 시행령에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예를 들어 모법이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적 부담을 높여갈 수 있겠느냐"면서 법 자체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여성발전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겨냥해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을 장관이 자의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데 대한 비판도 높다.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시행령 제30·32조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를 남기는 등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며 민간에 맡겨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등 정부쪽 인사 일색으로 구성해 민간 여성단체의 참여를 막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비슷한 구실을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성차별개선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어 업무 중복마저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여성주간'으로 정해 기념학술대회 등 관련 행사를 열 예정이다.